# 무배당 모아리치유니버셜적립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 확 인 서

무배당 모아리치유니버셜적립보험을 개정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13년 3월 15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서 종 무

# 사업방법서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사업방법서 별지)

##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모아리치유니버셜적립보험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료 납입주기 | 가입나이 |
|---|---|---|---|
| 80 세 만기 | 15 년납 | 월납 | 만 15 ~ 63 세 |

## 3.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최저 500 만원이상

##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 없음

## 5.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시점에 매월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한다.
계약자는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10 년(120 회 납입)까지는 기본보험료를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기본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이하 초기 10 년간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의무납입기간"이라 하며, 120 개월 분의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를 합하여 "의무납입보험료"라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보험계약 승낙일(승낙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자의 청약 후 회사의 승낙을 얻은 날을 말하며, 그에 따라 청약일과 승낙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후부터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다. 보험료 납입한도

(1) 기본보험료

보험가입금액의 2.0% ~ 5.0% (최소 15 만원 이상)

⑵ 추가납입보험료

①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한도로 하며,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선납포함)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 납입가능

②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 보험료는 '①'의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①'의 납입한도에서 인출금액의 누계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한다.

③ 추가납입보험료의 1회 최소납입한도는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한다.

라. 기타

의무납입기간 이후부터는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7. 월대체공제액에 관한 사항」의 '가' 참조)을 충당할 수 있으면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부터 의무납입기간 중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동안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도록 한다.

나.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는 월단위로 기산되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납입일시중지시점부터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이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1회 신청당 12개월(최소 3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개월수 포함)을 최고한도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가능횟수는 총 5회를 한도로 하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총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에 의하여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의무납입기간은 연장된다. 다만, 연장된 의무납입기간 종료시점이 보험료 납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동안 월대체공제액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월대체공제액을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을 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는 중단되고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마.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종료일 15일 이전에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에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

여야 한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료 납입신청서로 보험료 납입을 신청 할 수 있다.

바. '나', '라' 및 '마'의 월계약해당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경과된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한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한다.

## 7. 월대체공제액에 관한 사항

가. 월대체공제액의 정의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을 월대체공제액이라 한다.

나. 의무납입기간 이내의 월대체공제액

의무납입기간 이내의 월대체공제액은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납입시에 차감한다.

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동안의 월대체공제액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동안의 월대체공제액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차감한다. 이 경우 주계약보험료와 특약보험료 중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라. 의무납입기간 이후의 월대체공제액

의무납입기간 이후의 월대체공제액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주계약보험료와 특약보험료 중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 8.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의무납입기간 중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한다.

나.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및 의무납입기간 이후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그 월계약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한다.

## 9.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다음의 금액에 「15. 기타」의 '나'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만 납입하여야 한다.

⑴ 의무납입기간 이내에 실효된 경우 : 의무납입기간까지는 연체된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 보험료 포함) 이상의 금액, 의무납입기간 종료 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는 연체된 월대체공제액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이상의 금액

⑵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및 의무납입기간 이후에 실효된 경우 :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월대체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이상의 금액

나. '가'에 의하여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회사는 미납된 월대체공제액을 차감한다.

다. '가'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 이 계약의 약관 제 26 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약관 제 25 조(계약전 알릴의무)가 적용된다.

## 10. 감액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⑴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 개월이 지난 후 「5.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기본보험료 한도 내에서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⑵ 기본보험료의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지처리하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나. 보험가입금액

⑴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 개월이 지난 후 「3.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⑵ '(1)'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으로 인하여 기본보험료가 감액되는 경우에는 '가'에 따라 처리한다.

⑶ '(1)'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회사가 승낙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그 시점부터 변경된 보험가입한도를 충족하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11.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 개월이 지난 후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 12 회에 한하여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고, 계약후 경과기간 10 년 이내의 총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인출금액은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100 만원 또는 인출 당시 2 개월 분의 월대체공제액 중 큰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

라.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을 할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당시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에서 남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동안의 월대체공제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12.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적립계약의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가'의 공시이율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 일 적용한다. 회사는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기준이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에 따라 내부지표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 공시기준이율의 산출

(1) 공시기준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다만,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와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 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text{내부지표} \times (1-\alpha) + \text{외부지표} \times \alpha$

(2) 내부지표 산출식

$$\text{내부지표}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times 100$$

(주) $I$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간 투자 영업수익
$E$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간 투자 영업비용
$A_{12}$: 산출시점 직전 13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A_0$ : 산출시점 직전 1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3) 외부지표 산출식 = 국고채(5년) 수익률$\times \beta_1$+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times \beta_2$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times \beta_3$

- 국고채 가중치, 회사채 가중치, 통화안정증권 가중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beta_1$: 국고채 가중치 $= \frac{a}{a+b+c}$

$\beta_2$: 회사채 가중치 $= \frac{b}{a+b+c}$

$\beta_3$: 통화안정증권 가중치 $= \frac{c}{a+b+c}$

- a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c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 개월 이전 12 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 국고채(5년) 및 회사채(무보증 3년, AA-)와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 세부 지표금리의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의 실세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공시이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4) 내부지표와 외부지표의 가중치

-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외부지표의 가중치$(\alpha) = \frac{A/B + C}{A + C}$

내부지표의 가중치$(1 - \alpha) = 1 - \frac{A/B + C}{A + C}$

- A: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 개월 이전 12 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라. '나'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나'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마.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 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2.0%를 적용한다

바.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 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지침을 따른다.

## 13. 무배당 연금전환특약II에 관한 사항

가.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는 전환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14. 완납종신보험으로의 자동 전환에 관한 사항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80 세가 되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이 계약은 종신보험으로 자동 전환된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80 세가 되는 계약해당일 7 일 이전까지 계약자가 이 계약을 완납종신보험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전환되지 아니한다.

나. 완납종신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전환일의 계약자적립금을 종신보험의 일시납보험료로 충당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다.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80 세가 되는 계약해당일 30 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완납종신보험으로의 자동전환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 15. 기타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로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에 변경된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다.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⑴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 및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⑵ 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
⑶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공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라.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할인하여 이를 영수한다.

| 매월 기본보험료 | 할인금액 |
|---|---|
| 30만원 초과 50만원 미만 | 기본보험료 중 30만원 초과부분의 0.5% |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0원 + (기본보험료 중 50만원 초과부분의 1.4%) |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8,000원 + (기본보험료 중 100만원 초과부분의 1.6%) |
| 200만원 이상 | Min{ 24,000원 + (기본보험료 중 200만원 초과부분의 2.0%), 기본보험료의 2.0% } |

※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의 변경, 일부 해지 등을 이유로 기본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기본보험료 기준으로 고액계약 할인율을 적용한다.

마. 선납보험료에 관한 사항

⑴ 의무납입기간 중에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한하여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한다. 이때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⑵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하여 당해 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⑶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는 선납을 취급하지 아니한다.